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모아 分析해 보았다.<編 輯 者 註>.....○

● 第 3 回 ●

■ 이달의 目次 ■

■ 發明思想의 存在與否

■ 刊行物의 頒布

〈다음號에 繼續〉

는 것이라 할 것이다.

■ 刊行物의 頒布

不特定多數人이 閱覽할 수 있는 狀態

刊行物의 頒布라는 것은 刊行物을 不特定 多數人에게 何時라도 閱覽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特許局에入手된 刊行物은 國內에 頒布된 것이다.

※ 大法院(第3部) 1970. 12. 29 宣告, 70章 64判決

(特許出願查定不服, 1970. 10. 2, 1970抗告審判
第6號 審決)

原審은 本件 特許出願 拒絕參證인 刊行物은 日本國에서 1969. 4. 24. 發行되어 1969. 5. 15. 商工部 特許局圖書室에 接受되었음을 同刊行物 表示의 記載와 接受印에 依하여 確認할 수 있고 同刊行物의 記載要旨는 日本國 實用新案公報 44-127(5024) 公告 昭44-10142號에 依하여 引用하여 同 타을은 緯糸로서 強度의 나이통波狀單糸 多數本을 集束한 것과 縫糸를 交互로 配하고 經糸로서 直線 또는 硬度의 波狀을 賦한 나이통單糸를 配하여 織成한 것을 溫湯에 浸漬하여 緯糸인 나이통 波狀單糸를 收縮케 하고 또한 热芯트하여서 된 것이라는 說明과 同 織成한 때밀기 並用 타을의 全體平面圖 및 그一部組織의 擴大 平面度가 圖示되어 있으나 同 타을과 審判請求人이 1969. 6. 12字로 出願한 本件 特許의 要旨인 热可塑性 合成纖維로 된

■ 發明思想의 存在與否

發明의 作用效果의 存在與否

公知된 數種의 接着劑나 防火劑를 混加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技術의 作用效果가 있는 것이 아닌 以上 發明이라 할 수 없다.

※ 大法院(第3部) 1965. 11. 9 宣告, 64章 27判決

(特許出願查定不服 1964. 8. 11, 1963 抗告審判
第112號 審決)

本件 接着劑 兼 防水劑를 얻은 第1工程에 있어서 그處理過程中에 賦與하는 温度의 差異 또는 時間의 差異로 顯著히 다른 物質이生成되는 것이라는 點은 原審에 依하여 認定된 事實이 아님이明白하고, 王 公知된 數種의 接着劑나 防水劑를 混加하여 使用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技術의 作用效果가 있는 것이 아닌 以上 發明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工程에 依하여 만들어진 接着劑가 特異한 點이 있는 것이라는 點도 原審에 依하여 認定된 事實이 아니므로 原審이 認定된 事實을 떠나서 原審決을 非難하는 主張은 理由 없

100~400 페니-어의 卷縮狀 纖維와 縫糸를 緯糸로 하
고 40 페니-어 以下의 熱可塑性 纖維로 된 모노체라
멘트를 經糸로 하여 卷縮狀 纖維와 縫糸를 交代로 또는
몇줄 결러서 縫糸를 打込하여 織成한 때밀기 타올이라는
것과를 比較할 때兩者는 技術 및 組織上同一한
것으로 認定되어 本件 出願의 特許는 위 刊行物에 依
하여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程度라고 判斷하여 特
許法 第5條 第2項 第2號(舊法)에 依한 新規의 發明이
라 認定할 수 없다고 判斷하였는바 原審의 確定한 事實을 記錄에 依하여 檢討하면 適法하고 거기에는 採證
法則을 違背한 잘못을 發見할 수 없고 法理誤解의 違法도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特許法 第5條第2項 第2
號(舊法)에서 規定한 頒布라는 것은 刊行物을 不特定
多數人에게 何時라도 閱覽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
國에서 1969. 5. 15. 商工部 特許局에入手되고 그 後인
1969. 6. 12. 審判請求인이 出願을 한 本件에 있어서 原
審決이 위와 같은趣旨에서 위刊行物이 國내에 頒布된
것으로 보고 判斷한 原審決은 法理誤解의 잘못은
없으며 所論은 原審決의 正當한措處를 論難하는데 不
過하여 採用할 수 없다.

刊行物 頒布前의 公知의 推定

原審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本願의 考案과 引用
考案 1은 각 그 判示와 같은 構造로서 技術的構成에
있어同一性의 것으로 접수와 배수, 유연하면서도 의
압에 견디는 등 그 作用效果도同一한 것이라고 判示
하고, 따라서 本願의 考案은 引用考案 1에 依하여 容
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程度의 것이어서 新規한 考案
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判斷하고, 또한 引用考案 2는
本願의 考案과 完全同一한 것으로서 이는 1974. 12. 27.
出願 1976. 7. 6. 公開되어 本願의 考案出願日인 1975.
8. 18. 以後에 公開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出願된 考案은 그 出願後 即時 實用化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日本의 貿易去來나 交通·
通信事情 등으로 보아 本願出願前에 이미 公開된 것이라고
推定못할 바 없다 할 것이다라고 判示한 다음
本願의 考案은 引用考案 2에 依하여 出願前 公開된 것이라고
推定되는 것이라고 判斷하여, 結局 本願의 考案을
拒絕한 원사정은 正當한 것이라고 說示하고 있는 바
記錄에 비추어보니, 原審의 위와 같은 事實認定이나
判斷에는 違法事由없으며, 거기에 논지적시와 같은 法
理解誤解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가 들고 있는
是願의 判決은 事件에 適切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大法院 1980. 5. 13, 宣告 79호 62判決

出願後에 頒布된 刊行物

原審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1978. 5. 9 出願된 本件
發明은 1977. 12. 19 出願되어 1978. 10. 26 公告된 特許
公報 第344號機材의 發明과 그 製造方法, 發明의 目的
및 그 效果가 同一하다고 說示하면서 이는 特許法 第6
條 第2項 所定의 特許要件을 갖추지 못한 出願이라는
취지로 判斷하고 있다.

그러나 特許法 第6條 第2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취지
는 發明者가 그의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屬하는 技
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 公
知되었거나公然히 實施된 發明,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에 依하여 容易하게 發明
할 수 있는 것을 出願한 때에는 特許를 받을 수 없다
는 뜻으로 解釋할 것이고, 위 特許公報 第344號의 發
明은 本件 出願後인 1978. 10. 26에 公告된 것인 이상
위 公報 第344號의 發明은 本件 出願하여 위 特許法
第6條 1項 各號의 發明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며, 그렇다면 原審이 위와 것이 위 公報 第344號의 發
明을 本件 出願에 對하여 위 特許法 第6條 1項 各號의
發明으로 보아 本件 出願은 同法 第6條 2項에 該當되
어 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였음은 菲常
위 特許法 第6條 2項의 法理를 誤解한 違法을 저질렀
다 할 것이라도 이 點 論旨는 理由있고, 原審決은 그
破棄를 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大法院 1980. 9. 30 宣告, 80호 43判決

刊行物의 頒布의 時期

그러나 위 原審決에 依하면 그 審決時 실じ 日本國
刊行物인 「工業材料」가 國내에서 頒布되었다는 것인지
國外에서 반입되었다는 것인지가 不分明 할뿐 아니라
前者에 屬한다는 것이라면 위 刊行物이 本件 原審決
實施 登錄 第14277條 實用新案의 出願前에 이미 國內
에 頒布되었다는 點에 關하여 心理判斷에 되어있지 아
니하여 後者에 屬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 刊行物이
舊實用新案法(1980. 12. 31. 改正前) 第5條1項2號 但書
同法施行令 第2條에 該當한다는 點에 關하여 心理判斷
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結局 위 原審決은 위와 같은
實用新案法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하고 莫然히 위 登錄된 實用新案의 考案은 그 出願
前에 이미 위 刊行物에 의하여 公知된 것이라 하여 그
實用新案權으로서의 權利를 認定할 수 없다는 취지로
判斷한 것이라도 이 點에 關한 論旨는 理由있어 原判
決은 그 破棄를 免치 못한다 할 것이다.

※ 大法院 1981. 4. 14, 宣告, 80호 115判決 〈略〉